

2022수소모빌리티+쇼 참가관리 규정

제1조 (용어의 정의)

- ① “모빌리티+쇼”라 함은 2022수소모빌리티+쇼를 말한다.
- ② “참가업체”라 함은 본 모빌리티+쇼 참가를 위해 참가신청서 제출과 참가비를 납부하고, 모빌리티+쇼 전시기간 동안 전시규정에 따라 전시품을 전시하는 업체(기관 및 단체 포함)를 말한다.
- ③ “주최자”라 함은 “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에 소재하고 있는 수소모빌리티+쇼조직위원회”를 말한다.

제2조 (참가신청)

- ① 참가신청은 수소모빌리티+쇼 홈페이지(www.h2mobility.kr)를 통해 신청한다.
- ② 참가신청서 제출시 제3조에 따라 참가신청금을 납부하여야 참가신청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참가비 납부조건)

- ① 참가비는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.
- ② 참가업체는 참가신청금(참가비의 50%)을 참가신청시 납부하고 잔금은 2022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신청마감일인 2022년 6월 30일 이후에 참가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주최자가 전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참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참가업체는 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100% 완납하여야 한다.

제4조 (전시위치와 면적 배정)

- ① 주최자는 참가업체의 전시면적 규모 순, 동일 면적시 참가신청(참가비의 50% 납부) 일자순으로 전시위치와 면적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주최자가 참가신청 현황 변경 등 필요한 경우 참가업체에 배정된 전시위치와 면적을 재조정할 수 있다.
- ② 주최자가 모빌리티+쇼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유치한 참가업체는 위치배정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.
- ③ 참가신청 면적이 주최자가 확보한 전시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최자가 모든 참가업체의 신청면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- ④ 참가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받은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참가자간 상호교환 할 수 없다.

제5조 (모빌리티+쇼의 취소 및 변경)

- ① 주최자가 천재지변, 정부의 요청, 전염병, 긴급사태 발생 등 불가항력이나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모빌리티+쇼를 취소 또는 변경, 중단할 경우에 주최자는 이러한 사유로 참가업체에 발생된 손실(참가비, 전시 장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등)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.
- ② 주최자는 원활한 전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빌리티+쇼의 기간과 개장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는 제1항과 같이 주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주최자가 임의 취소 등 귀책사유로 모빌리티+쇼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환불함으로써 참가업체에 대한 손실을 전부 보상하는 것으로 같음한다.

제6조 (참가업체의 참가해지·취소 및 위약금)

- ① 참가업체가 2022년 6월 30일까지 참가비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업체 신청을 해지하고 미납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.
- ② 참가업체가 전시참가를 취소하거나 전시배정 면적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주최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해야 하며, 주최자는 참가비에서 아래표에 따른 위약금을 차감하여 이자 없이 환불한다.

해지 및 취소 시기	위약금
2022. 6. 1 - 2022. 7. 15	기준액의 50%
2022. 7. 16 - 2022. 8. 30(개최전일)	기준액의 100%

※ 기준액 = (취소면적/배정면적) × 전체참가비

※ 배정면적은 전시면적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시 신청면적으로 본다.

- ③ 제2항의 취소시점은 참가업체의 사용취소 요청 공문서 도착일자를 기준으로 한다.

제7조 (전시부스 설치 및 전시장 관리)

- ① 참가업체는 “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, 행사 안전관리지침”과 주최자가 정한 “모빌리티+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”에 따라 자사 부스를 설치, 관리, 운영하여야 하며, 전시에 따른 원활한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②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의 설치 및 관리, 철거함에 있어 화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 준수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.
- ③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한 손상, 도난, 화재나 안전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④ 참가업체는 전시장 시설물 및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이를 훼손 및 파손할 경우에는 전시부스 철거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라 주최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한다.
- ⑤ 참가업체가 제1항에 따른 요령과 제반 지침에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며 주최자는 요령 및 지침에 따라 참가업체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⑥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전시장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⑦ 주최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품목,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제8조 (보험부보)

- ① 주최자는 전시기간중 전시장내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(영업배상책임보험)에 가입한다.
- ② 참가업체는 부스설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모빌리티+쇼 전 기간 동안 자사 부스에서 관리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9조 (보충규정)

- ① 킨텍스 “킨텍스 전시장 운영요령, 행사 안전관리지침”과 “모빌리티+쇼 참가업체 전시장치 및 전시운영지침”은 본 참가관리 규정의 보충규정이 되며, 참가업체는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② 전시장 운영주최자 또는 대내외 전시 관련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제1항의 보충규정이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10조 (분쟁해결) 본 참가관리 규정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며, 상호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되, 해결되지 못한 분쟁은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.